

#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 요 약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된 신입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로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and Improvement Plan.

Park, Hyung-Sik\*

### Abstracts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17 provisions among 31 provisions in order to root out the violent even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is the intensification of the required condition of permission, intensification of the obligation, management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esentment of group field, official, reason of expansion of the expenses instructor and guard, dress and equipment, vehicle, intensification of the managing director, intensification of the punishment, and etc.

However, there is the problem including the putting under an obligation of the arrangement new appointment education, cause provider punishment of the service company violence, awareness of the police to the security company, excessive regulation,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problem, supervision power intensification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is excessive the police, and etc.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education completion method and public resentment of group field in addition to is thought in order to solve this that exclusion of the prior education obligation, revision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burden on tax payers of the extra charge, punishment of the violence request contract trader, introduction of the guard qualification certificate system, and etc. are needed.

**key words** :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new appointment education, violent event, police

접수일 : 2013년 10월 4일 1차수정일: 2013년 10월 17일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18일

## 1. 서론

경비업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찰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경비업체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비업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경비업법(2013.6.7 법률 제11872호 개정, 2014.6.8시행)이 총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이 개정되는 대폭 개정이 있었다. 이번에 경비업법이 개정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12년 7월에 발생한 경기 안산의 SJM사태라고 할 수 있다. 2012.7.27.04:30경 경비업체 컨택터스 경비원 198명이 안산 SJM노사분규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농성중인 노조원과 사설 경비업체간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SJM 사측은 노조파괴를 위하여 경비업체 컨택터스에게 노조원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등 40여명이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회·언론에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미흡 등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차제에 용역폭력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법률개정을 하였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1976.12.31 용역경비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1977.4.1 시행된 이후 17차례나 개정되었다<sup>1)</sup>. 그런데 이번 개정된 경비업법은 주로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경비업체의 허가요건 강화, 경비원의 결격사유 강화, 경비업자의 의무 강화, 복장 및 장비차량 등 규제 강화, 배치전 교육 및 신고 강화, 경찰 감독 강화, 벌칙 및 형의 가중처벌, 과태료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비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이중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이들 경비업체를 통제하는 경비업법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업성이 위축되어 경비업체의 도산과 사경비의 축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업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경비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비용역수주를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경비업체의 영세성을 가속화 할 것이다. 또한 용역발주업체의 폭력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여 SJM사태와 같은 유혈폭력사태 및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민의 치안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런데도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화한 법개정을 함으로써,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제정된다면 국민들이 지킬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2.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경비업법에서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시 경찰서장에게 48시간전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각종 의무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2.1 허가요건의 강화

#### 2.1.1 자본과 인력요건 강화

자본금의 상향과 경비지도사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즉,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하였다(경비업법 제4조 제2항).

#### 2.1.2 허가의 제한

1) 정진환·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진영사, p.59, 2013.

2) 서진석, “경비업체 지도점검 결과 분석을 통한 과제와 대책”, p.2, 2009.

동일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명칭은 10년간 재허가를 불허하고, 취소된 법인은 5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 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경비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경비업법제4조의2 신설).

### 2.1.3 허가취소사유의 추가

기존의 허가취소사유에 ①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2가지를 추가하여 취소사유를 강화하였다.(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7호, 제8호)

## 2.2 의무의 강화

### 2.2.1 경비업자의 의무강화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배치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7조 제6항 신설)라고 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 2.2.2 도급인의 의무 신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경비업법 제7조의 2 제1항)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3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 2.3.1 집단민원현장의 명확화

집단민원현장을 노사분규, 재개발현장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집단민원현장"이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장소,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대집행을 하는 장소 등이다.(경비업법제2조제5호신설)

### 2.3.2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배치

#### ① 직접고용금지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비업법 제7조의 2 신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② 명부비치 및 배치허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특수경비원과 집단민원현장 외에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은 배치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경비업법 제18조).

#### ③ 배치금지

상해·폭행·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경비업법 제18조 제3항 및 제5항 신설).

## 2.4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 2.4.1 임원의 결격사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임원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경비업법제5조 제6호 신설).

## 2.4.2 전과자추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 활동 전과자, 경비업법 위반 전과자, 「형법」상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하였다(경비업법 제10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0조 제2항 제2호).

## 2.4.3 범죄경력조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경비업법 제17조).

## 2.5 복장 및 장비, 차량

### 2.5.1 복장

경비업자는 경찰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여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하여 경비업자에게 복장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행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경비업법 제16조).

### 2.5.2 장비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경비원의 휴대장비를 개조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비업법 제16조의 2 신설).

### 2.5.3 차량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경비업법 제16조의 3 신설)

## 2.6 관리감독의 강화

### 2.6.1 중지명령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비업법 제24조 제3항 신설).

### 2.6.2 배치폐지명령

배치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비업법 제18조 제8항 신설).

## 2.7 처벌의 강화

### 2.7.1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였다(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2.7.2 형의 가중처벌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경비업법 제29조 제2항 신설)고 규정하였다.

## 3.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

이번 경비업법의 개정은 경비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아닌 경비업체의 위축을 가져올 위험이 높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3.1 배치전 신입교육의 의무화

개정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제18조 제7항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입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비원은 배치되기 전에 신입교육을 이수해야만 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배치되면 처벌을 받아야한다.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전교육의무를 차별화하지 않고, 모든 경비업무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3,800여개의 경비업체에 15만여 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1년 내내가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일을 맡을지 모르는데 경비원을 미리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대기시켜 놓을 수 없는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에 치우친 입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비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배치전 임금의 발생, 경비원배치와 교육일정의 불일치, 교육이수자 배치후 이직시 근무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3.2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노사분규나 재개발현장, 주주총회 등의 현장에서 용역업체 들의 폭력행위는 사회안전의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현장에 동원되는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는 도급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집단민원현장에서 노조나 농성자들이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죽창 심지어는 사제총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폭력의 위협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3.3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이번 경비업법 개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경찰의 감독 강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JM노사분규현장의 폭력사태는 노조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업체가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충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철거현장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경비업체가 아니고, 치안을 공동생산하는 파트너로서 경비업체를 인정할 때에 규제와 감독이 아닌 자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3.4 과도한 규제

개정 경비업법에서는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경비원을 20명에 경비지도사 1명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경비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치안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업체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업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경찰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경비업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폭력행사 등 상습적인 불법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철저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5 처벌강화의 문제

이번 개정 경비업법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었다.<sup>5)</sup>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몰라도 명부미비치, 복장미신고, 이름표 미신고, 동일복장 미착용, 신입교육 미이수자 배치 등에 대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벌의 강화라고 보여진다.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추가된 근무상황 미기록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3) (사)한국경비협회, 2013경비업법 개정공포에 따른 대토론회 계획서, pp.7'8, 2013.

4) (사)한국경비협회, 경찰청건의사항, p.3, 2013.

5) 안황권,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2013민간경비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p.24, 2013.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상황에 대처하다보면 미처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3.6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경비업자가 도급업자와 계약을 맺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행위는 사인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비업의 목적이 도난이나 화재, 위험발생의 방지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찰의 개입이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민사관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경찰공공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 경비업법상의 중지명령이나 배치폐지명령은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4. 개선방안

### 4.1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개정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서도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할 경비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경비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인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4.2 경비업법의 재개정

배치 전에 신입교육을 의무화하게 된 원인이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 때문이라면,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기타 경비원은 현재와 같이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법을 재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4.3 규제완화 및 자율성 강화

경비업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영리 추구가 목적이다. 그래서 지나친 규제나 처벌의 강화는 자

칫 경비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4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현재와 같이 경비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비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비원의 사전교육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5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집단민원현장에서 근본적으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는 도급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4.6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제도와 같이 각 개인이 경비원교육을 받게 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이수자에게 경비원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6)</sup>

## 참고문헌

- [1] 정진환·서진석, 「경비업법」, 진영사, p. 59, 2013.
- [2] 서진석, “경비업체 지도점검 결과 분석을 통한 과제와 대책”, p.2, 2009.
- [3] (사)한국경비협회, 2013경비업법 개정공포에 따른 대토론회계획서, pp.7~8, 2013.
- [4] (사)한국경비협회, 경찰청건의사항, p.3, 2013.
- [5] 안황권,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p. 24, 2013.
- [6] 김정환·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백산출판사, p. 606, 2009.

6) 김정환, 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2009, p. 606.

————— [저자 소개] —————



**박형식 (Park Hyung Sik)**

1885년 경찰대학교 행정학학사

1999년 경희대학교 행정학석사

2007년 광운대학교 행정학박사

2008년부터 중부대학교교수

email : k62711@naver.com